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124
----------	---------

제안년월일 : 2021년 03월 02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일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여 매끄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호의 “전통무예단체”에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나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 -----.</p>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